

의안번호	2212831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4.
추 계 번호	25A4986

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, 스마트 제조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,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2,600만원, 2031년 6,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9,000만원(연평균 7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(안 제6조)	16	16	16	16	16	80	16
실태조사(안 제7조)·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8조)	50	50	50	50	50	250	50
합 계	126	66	66	66	66	390	78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)	○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(실태조사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,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4	안 제8조(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국내외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5	안 제9조(전담기관의 지정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안 제10조(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마다 스마트제조기술 실태조사(이하 “기술 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함(제2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7	안 제11조(스마트제조산업 융합의 촉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전 분야에서 스마트제조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스마트제조기술 실증기반 조성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,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,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·장비·설비 등(이하 “실증기반등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9	안 제13조(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역량 진단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촉진하기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위하여 기술수준, 경영역량, 과업관리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(이하 “역량진단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역량진단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
10	안 제14조(핵심 스마트 제조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,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, 단체,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1	안 제15조(스마트제조 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역량진단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2	안 제16조(스마트제조 기술기업 창업의 촉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3	안 제17조(스마트제조 산업의 동반성장 강화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인 스마트제조기술기업과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14	안 제18조(지역 스마트 제조산업의 균형 발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제조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, 지역 내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 등의 혁신주체 간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와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하는 스마트제조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5	안 제19조(국제협력의 추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 및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을 할 수 있음(제2항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받은 기관·단체 등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
16	안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 시책등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이나 연구소,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7	안 제23조(스마트제조산업 우수기업등 포상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스마트제조기술기업,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및 스마트제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(이하 “스마트제조산업 우수기업등”이라 한다)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8	안 제24조(금융 및 세제 지원 등)	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조산업 및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조기술기업,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·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19	안 제25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스마트제조데이터 생산·수집, 가공·분석, 공유·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중소기업, 스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20	안 제26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의 조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원활히 생산·수집, 가공·분석, 공유·유통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데이터 접근권한, 공유 및 거래자의 이익보호 등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1	안 제27조(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간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참조모델 개발과 「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통한 표준 참조모델 확산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2	안 제28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, 「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등에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	○	—
2	안 제6조(스마트제조산업발전 위원회)	○	—
3	안 제7조(실태조사)	○	—
4	안 제8조(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○	—
5	안 제9조(전담기관의 지정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중소기업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,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,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6	안 제10조(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 지원)	X	
7	안 제11조(스마트제조산업 융합의 촉진)	X	
8	안 제12조(스마트제조기술 실증기반 조성 등)	X	
9	안 제13조(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역량 진단)	X	
10	안 제14조(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)	X	
11	안 제15조(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	X	
12	안 제16조(스마트제조기술기업 창업의 촉진)	X	
13	안 제17조(스마트제조산업의 동반성장 강화)	X	
14	안 제18조(지역 스마트제조산업의 균형 발전)	X	
15	안 제19조(국제협력의 추진)	X	
16	안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 시책등)	X	
17	안 제23조(스마트제조산업 우수기업등 포상)	X	
18	안 제24조(금융 및 세제지원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등)		
19	안 제25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)	X	
20	안 제26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의 조성)	X	
21	안 제27조(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)	X	
22	안 제28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중소벤처기업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4 결산	2025 예산	2026 예산
안 제13조 (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역량 진단)	공급기업 역량진단	일반회계 (중소벤처기업부)	300	1,000	800
안 제26조 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의 조성)	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(제조데이터생태계구축)	일반회계 (중소벤처기업부)	1,493	3,000	8,140
안 제27조 (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)	데이터인프라구축(정보화)	일반회계 (중소벤처기업부)	6,900	5,836	5,922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 - 제정안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2027년에 6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제조데이터 활용 정책 연구”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2025년, 7,999만원), “미래 스마트공장 방향제시 및 스마트 제조산업발전 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6년, 8,573만원), “스마트공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”(중소벤처기업부, 2020년, 1,952만원) 등이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스마트제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(안 제6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관련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
 -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정원의 과반인 16명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

의·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- 안 제6조제1항에 따르면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
 1.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2. 제14조에 따른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3.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·변경에 관한 사항
 4. 스마트제조산업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
 5.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8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5] 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스마트제조산업발전위원회(안 제6조)	16	16	16	16	16	80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실태조사(안 제7조)·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8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동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제정안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매년 5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
-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스마트 제조산업 생태계 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9년, 8,500만원), “2025년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추진 및 분석연구”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2025년, 3,661만원), “스마트제조혁신 통계정보 조사 및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”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2025년, 2,417만원) 등이 있음

- 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7조)·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 계의 작성(안 제8조)	50	50	50	50	50	250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